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자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교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피부양 노부모

①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②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현재 65세 이상인 자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 지원금액 : 월 20만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6종)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
- 지원금액 : 월 20만원 (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 미부양 사실 확인서 1부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대상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원 한도 매칭	
유자녀	장학금	초등	분기 20만원
		중등	분기 30만원
		고등	분기 40만원
피부양 노부모	무이자 생활자금대출	월 20만원	
	피부양보조금	월 20만원	

초·중·고등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및 피해 당사자
- 지원기준

**성적 장학금 (중·고등)**  
 • 전과목성취평가 산출시 :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의 평균이 D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 혼합산출시 : 보통교과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0 이내에 해당하고, 전문교과의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의 평균이 D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특기 장학금 (초·중·고등)**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은 자 또는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에서 상을 수상한 자 ※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거나, 수상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학교장 추천 장학금**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산출되지 않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학급)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장학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지원금액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연2회)	지원시기(연4회)
초등학교	분기 20만원	(1학기) 3.2~4.30 (2학기) 9.1~10.31	(1학기) 4. 5월 (2학기) 9. 10월
중학교	분기 30만원		
고등학교	분기 40만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재학증명서 1부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수상실적이 있을 시 상장 사본 1부
- ※ 교육장,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대출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부터 만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대출금액 : 월 20만원 (매월 말 지급)
- 대출조건
  -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0세가 되는 달까지) ※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 상환기간**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희망시 일시상환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앞뒤) 사본 1부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부터 만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6만원까지 동일금액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 18세 되는 달까지
- 지원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만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생인 자에 한함) 1부

지원신청 공통서류 및 증명서류 발급 안내

지원신청 공통서류 (6종)

- ①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예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⑥ 예금통장 사본 1부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해당 경찰서
	보험금 지급확인원	손해보험사

후유장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결정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생활형편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